삼 척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 보

선람	기 관 의 장

제1071호 2019. 5. 24.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58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 2
○ 삼척시 고시 제59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3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463호 삼척시 세계 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
○ 삼척시 공고 제470호 행정대집행 공시송달 공고 ------------------- 11
○ 삼척시 공고 제474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처분 공고 ---------- 15
○ 삼척시 공고 제478호 삼척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6

공람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19 - 58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및 삼척시 시세 조례 제14조【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규정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 용대상 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3일

삼 척 시 장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현황

지역별	면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계	**80,389,976.1**	**증)15,207**	**80,405,183.1**	
동지역 (미로면포함)	51,950,300.0	-	51,950,300.0	
도계읍	8,031,000.0	-	8,031,000.0	
원덕읍 호산지역	9,209,681.1	-	9,209,681.1	
원덕읍 임원지역	2,111,750.0	-	2,111,750.0	
근덕면	8,305,217.0	증)15,207	8,320,424.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04호
방재산업단지	782,028.0	-	782,028.0	

○ 적용일 : 2019 6. 1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삼척시 고시 제2019 - 59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5. 24.

삼 척 시 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두타로 1966-24 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 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5. 2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하거노리 763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두타로 1966-24	20190524		20090626	지형지물(두타산) 명칭활용
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곡리 637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곡길 508-59	20190524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계	도로명주소 2건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허거노리 763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두타로 1966-24	20190524		20090626	지형지물(두타산)명칭활용	
부여	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곡리 637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곡길 508-69	20190524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삼척시 공고 제2019-463호

삼척시 세계 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세계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운영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5월 20일

삼 척 시 장

1. 제안이유

2012년 조례가 일부개정된 이후로 사무기구 변경 등에 따른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부서의 명칭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및 담당업무 개정 (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제5항)

나. 생태공원 부서 명칭 및 담당업무 신설 (안 제6조제6항)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참조 : 삼척시농업기술센터 교육연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5959) 삼척시 원덕읍 산양서원2길 46 연구교육관
○ 전 화 : (033) 570-4580 ○ FAX : (033) 572-6728
○ 전자우편 : guhee2@korea.kr

4. 그 밖의 사항

○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삼척시 세계 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1부. 끝.

[붙임1]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세계 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세계 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운영지원담당, 연구개발담당, 교육경영담당”을 “관리담당, 연구담당, 교육담당, 생태공원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지원담당”을 “관리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연구개발담당”을 “연구담당”으로, “각종 농법”을 “각종농법”으로, “농산물가공 연구, 특허등록”을 “특허등록”으로, “생태체험공원 관리, 유기농자재개발”을 “체험농장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경영담당”을 “교육담당”으로, “수립 및”을 “수립,”으로, “사항을”을 “사항, 농산물가공 연구,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자재 개발에 관한 업무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생태공원담당은 자연생태공원 관리, 채험프로그램 개발, 산양농산촌체험마을 운영 업무를 담당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구성) ① 연구교육관에는 관장, 운영지원담당, 연구개발담당, 교육경영담당과 운영에 필요한 직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6조(구성) ① ---------- 관리담당, 연구담당, 교육담당, 생태공원담당----------.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운영지원담당은 연구교육관의 예산집행, 운영위원회 및 기술자문·인력평가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연구교육관에 관련된 문서의 접수·발송·보관, 인증수수료 수납 등 일반 행정에 관한 업무, 각종 시설물 관리와 설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관리담당----------.
④ 연구개발담당은 유기농과 관련된 각종 농법의 연구개발, 유기종자 채종, 농산물 가공 연구, 특허등록 및 관리, 시험포장 및 생태체험공원 관리, 유기농자재개발, 실험분석, 각종 분석관련 민원 상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연구담당---------- 각종 농법---------- 특허등록 ---------- 체험농장 운영----------.
⑤ 교육경영담당은 연구교육관의 종합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⑤ 교육담당---------- 수립, ---------- 사항, 농산물가공 연구,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자재 개발에 관한 업무를 ------.
<신 설>	⑥ 생태공원담당은 자연생태공원 관리, 체험프로그램 개발, 산양농산촌체험 마을 운영 업무를 담당한다.

[붙임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명 : 삼척시 세계 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19-47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같은 법 제133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 05. 22.

삼 척 시 장

1. 처분내용 : 행정대집행 계고

2. 처분 대상자

종 류	대지위치	허가자	허가목적	비고
개발행위 (토지형질변경)	원덕읍 옥원리 397-2번지 일원	강*씨앤씨(주) (삼척시 원덕읍)	가설건축물 부지조성	

3. 처분의 원인 : 개발행위허가지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4. 처분의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제133조

5. 공 고 기 간: 2019. 05. 22. ~ 2019. 06. 12.

7. 게 시 장 소: 전국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8. 기 타 사 항:

가. 상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할 예정이오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133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기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나. 행정대집행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도시과 도시행정부서(033-570-3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의견제출서 및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1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삼 척 시 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28>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①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 척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 청문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직접 통지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삼척시청 도시과 도시행정부서 ☎033)570-39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공고 제2019-474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처분 공고

수산업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처분하였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3일

삼 척 시 장

❍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처분 내역

어업의 종 류	면허번호 (면적)	어장의 위 치	어업권자	면허기간	연장허가
정치망 어 업	제09-1호 (10.5ha)	삼척시 문암리지선	김**	2009.05.26. 2019.05.25.	2019.05.26. 2029.05.25.

삼척시 공고 제2019-478호

삼척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삼척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내용을 삼척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8일

삼 척 시 장

1. 제안이유

「삼척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하고 건립기준, 건립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건립 인·허가 등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건립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바. 공공조형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의견제출

삼척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19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5914)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도시과
- 전 화 : 033-570-3448
- 팩 스 : 033-570-3182
- 전자우편 : jjunylt@korea.kr

4. 그 밖의 사항

삼척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삼척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1부.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3.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공공조형물 현황 및 통계관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건립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 건립 인·허가, 보수와 보존처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 등에 대하여 건립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건립 인·허가 등”이란 공공조형물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말한다.
7. “보수”란 공공조형물 등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8.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 등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건립 인·허가 등 신청) ① 건립주체는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 인·허가 등을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건립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건립 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② 제1항에 따라 건립 인·허가 등을 신청한 공공조형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 등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건립기준) ① 공공조형물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할 것
2. 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것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② 인물 또는 사실에 관한 공공조형물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경우에 한하며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③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상은 출생지·묘소·활동지역·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사실과의 긴밀성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 등과의 조화
3.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제7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공공조형물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 건립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이 제6조에서 정한 건립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3. 그 밖에 공공조형물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를 대신하여 「경관법」 제29조에 따른 시 경관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의하는 경우 지역주민 대표,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관련부서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예산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삼척시 경관형성 조례」 제29조를 준용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의무와 관여금지) ① 심의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한다.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
2. 심의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

③ 위 각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 신청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 본인이 심의 기피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의하여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심의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0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에 따른 건립 인·허가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관리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 인·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 등을 건립한 후 관리부서로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5. 관리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공공조형물 건립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공공조형물 건립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심의 또는 회의를 거친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부서에서는 주관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 등) ① 제10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관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 ① 관리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비치
2. 공공조형물 등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관리부서장은 관할 내 모든 공공조형물 등에 대해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년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장은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 등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 등의 이설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조형물의 활용)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기타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립 또는 건립 결정된 공공조형물은 제7조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공공조형물 건립신청서(제4조제1항제1호 관련)

신 청 자	성명(단체명)		전화	
	주 소		대상자와의 관계	
건립대상 (동상인 경우)	성명(한 자)		생년월일	
	생 존 기 간		사망자	
	주요업적개요			

「삼척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삼척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건립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건립대상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3. 건립취지
4. 기타 증빙서류

[별지 제2호서식]

공공조형물 건립계획서(제4조제1항제2호 관련)

1. 사 업 명

2. 추진기간

3. 사업개요

가. 규 모 :

나. 모형 또는 형태 :

다. 재 질 :

4. 작품설명

5. 제 작 자

6. 사 업 비

7. 사업비 조달계획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제12조제1항제1호 관련)

명 칭		건립일자	
위 치 (공공시설명)		형 상	
구 조			
규 격			
건립주체		관리기관	
건립취지			
인물 또는 사실 소개			

(뒤쪽)

공공조형물의 위치(배치)도
공공조형물의 전면사진 (5″× 7″)

[붙임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규칙 제명 : 삼척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의견제출자**

- ❍ 성명(단체명) :
- ❍ 주 소 :
- ❍ 연 락 처 :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